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10.18.)

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6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9
5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15
7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	18
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	21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개정이유

-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18. 5. 1. 시행)되어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중심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이 전환되었는데, 현행 조례는 여전히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명)
 - 제명 :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 「거창군 소비자 기본 조례」
 - 위임근거 인용법명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나.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정함.(안 제6조~제13조)
- 마.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윤택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개정이유

-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토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적 정책방향 지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3조)
 -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개략적인 사항도 정하지 않고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

- 나. 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춰 정비.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함.(안 제36조·제44조·제46조·제47조, 현행 제43조·제45조 삭제)
 -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명칭 간소화 (안 제48조·제49조)
- 다. 생산녹지지역 행위 제한 완화함.(안 별표 1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허용
- 라. 보전관리지역 행위 제한 완화함.(안 별표 1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허용
- 마.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허용함.(안 별표 18)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하여 주민에게 혜택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 바. 계획위원회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사항 등 반영.(안 63조의 2)
- 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함.(안 별표 23)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200kW미만 신설(도로와 이격거리 100m,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200m미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입지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과,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현행 기준을 2017. 5. 10. 공포하여 시행중임. 금번 개정사항은 발전용량 200kW미만에 대하여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100m이내 및 주거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미관훼손 염려로 인한 주민민원 예상 및 햇빛 반사 등에 따른 도로 차량 운전자의 시거 장애로 인한 교통 위험성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별표 23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 200KW 미만은 삭제
 - 200KW 이상 300KW 미만을 300KW 미만으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제안이유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위탁개요

- 가. 사 업 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나. 사 업 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3대
- 다. 대상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3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2015.7.1.~2018.12.3.(당초 2015.7.1.~2018.6.30.)

○ 위탁차량

차종	차명	차량번호	연식	비고
중형승합	창림하이램프장애인차	74우8737	2012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창림하이램프장애인차	74우8738	2012	
중형승합	창림하이램프장애인차	74우8739	2012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5년도 : 3,895명(1일 평균 운행횟수 10.6)
- 2016년도 : 3,218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17년도 : 3,2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7)
- 2018년도 상반기 : 1,526명(1일 평균 운행횟수 8.4)

마. 운영계획

○ 모집방법 : 공개모집(1개 업체)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

○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운행시간 : 평일(7~21시), 토요일(8시~18시), 일요일(8시~13시)
(연중무휴)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에게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60일 전)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관리·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제안이유

- 신원면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행정기능이 소멸하여 매립장 미 매립지(현장사무실 등) 일부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행정재산의 가치를 최대화 하고 인근 감악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추진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 사업자 : 감악마을회관(대표 유종수)
 - 사업기간 : 2019. 2. ~ 2019. 6.(5개월간)
 - 발전용량 : 100kW
 - 사업비 : 200백만원(낙동강 수계기금)
 - 발전금액 : 24,000천원/년

나. 그간 추진사항

- 2017.12.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낙동강수계기금)
- 2018. 2. : 매립장 부지 지목변경 및 분할
- 2018. 2. :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 승인

다.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토지소유자 거창군)

위 치	면적(m ²)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합 계	4,499	1,500	100kW	
신원면 구사리 1625-18번지	4,499	1,500	100kW	감악마을협의회 대표 유종수

라.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 지내에 설치된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행정기능이 소멸되어 건설폐기물 매립장 미 매립지 일부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최대화 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군 의회가 심의할 내용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관련법규로 거창군에서 제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 동의에 필요한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조례 정비 후 의회 동의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위탁개요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33,819㎡(거창군)
 - 연면적 ▭ 당초 : 8,219㎡(선별 3,499㎡, 저장 1,780㎡(1,440톤) / 기타 2,940㎡)
└ 보완 : 2,874㎡(선별 1,171㎡, 저장 1,467㎡, 기타 236㎡)
 - 시설내역 : 선별기(1일 50톤/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나. 위탁사무

- 시설 :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다. 운영계획

- 위탁업체선정 : 공모방식
 -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조례 제15조에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60일 전)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 따라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17. 9. 15.)된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과,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간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민간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업비 : 20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2019년	100	200	200	-	-	200	-

- 사업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안정사업 컨설팅 등 업무 지원

4. 부서 의견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20.6%, 경남도 33.5%, 시·군 2.8%, 금융기관 37.7%, 기업체 등이 5.4%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5년, 2017년, 2018년 각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업비 : 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180	80	80	40	4	36	-

○ 사업내용

- 석재자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표면가공 기술개발(표면가공 복합기법, 보급형컬링 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등

4. 부서 의견

- 우리 군 실물경제의 중추인 석재산업계의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석재자원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 국내 석재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활동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금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을 위하여 각종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지원하여 경남의 지역 특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산·석재 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2018년 180백만원 지원함),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 완성 및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7. 토론요지 : 없음
- 8. 수정안 요지 : 없음
-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9. 2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0. 15.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업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19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9년	18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 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검토 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3년부터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18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계획하고 있음('17년 이사회에서 센터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천만원 줄여 지원토록 검토함)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 경제성 평가와 연구 및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